



: 2018-05-30

서울 행정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5576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
원 고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피 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3. 14.
판 결 선 고 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인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17. 6. 1. 원고에게 한 1,836,568,560원의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836,568,560원의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 연구개발비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립대학교인 포항공과대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고, 포항공과대학교 산하 포항가속기연구소는 1995.경부터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포항공과대학교와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는데, 이하 미래창조과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틀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한다)은 2015. 2.경 당해연도 협약 연구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

- 연구개발 사업명: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사업
- 총 연구개발기간(계속사업): 1995년부터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3년):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당해연도 협약연구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협약당사자
 - 갑: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을: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 주관연구책임자(병): 소속 포항가속기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2015년 2월 20,000,000,000원

(나) 제2차: 2015년 6월 12,835,000,000원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동 규정 시행규칙과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3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관리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 별표3의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제3항에 따른 항목별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③ 을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 동 규정 시행규칙 및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로 한다.

다.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그 산하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2016. 5.경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사용 실적에 관한 정산을 실시하였다.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6. 8. 24. 원고에



게 "학교경영기관인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그 법인부담금을 집행하였다. 위와 같이 부당집행한 법인부담금 등은 관리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회수대상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사업 정밀정산에 따른 조치' 통보(이하 '이 사건 정산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자,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17. 6. 1. 위 정산에 따른 반납비용 1,836,568,560원을 납입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입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납입고지 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이 사건 납입고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¹⁾ 제11조의2에 근거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통지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인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5항 및 구 관리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등에 따른 정산금 회수·납입 고지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납입고지는 연구개발 종료 후 정산한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사업비 정산 결과의 고지에 불과할 뿐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참조).

나)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개인 등의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일정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의한 사업비 환수의 세부기준은 구 관

1) 원고는 '이 사건 납입고지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인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등 참조). 원고 내지 이 사건 연구소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를 원고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집행·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2015. 12. 23. 시행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과학기술기본법을 원고가 주장하는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로 한다.



: 2018-05-30

리규정(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내용에 의하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환수기준은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로,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의 환수기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등 환수금액을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업비 금액 이내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과제 출연금 전액 또는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납입고지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정산 통보에 따르면, "학교경영 기관인 원고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그 법인부담금을 집행하였으므로, 관리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부당 집행한 법인부담금 등을 국고에 회수·반납 해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구 관리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등을 들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4항에서 연구개발비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입고지는 구 관리규정 제19조를 근거로 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구 관리규정 제19조는 제4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 2018-05-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납입고지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협약에 따른 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구 관리규정과 구 처리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협약에 따른 정산절차의 일부일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제재조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는 환수처분과 달리, 위와 같은 사업비 반납요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과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이에 체결되는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협약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이 부당집행된 금액을 한도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사업비정산 행위에 불과하다.



마) 또한 이 사건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비용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의 제재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공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구 처리규정 제30조 제6항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의 조치만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 이 사건 납입고지는 협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관리규정 별표2 및 구 처리규정 별표3 등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계산 방법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집행·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다. 또한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2항과 구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 부담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교경영기관임을 선언하는 일반적인 규정 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과 동일한 성격인 사학 연금의 법인부담분도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집행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비 정산금의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연구개발비 등으로부터 집행한 원고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학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구 관리규정 별표2 및 구 처리규정 별표3 등의 규정은 대학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학연금의 부담금을 연구개발비의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넘어 법인 부담금까지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집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학교법인은 그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법인회계를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학교법인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제6항).

법인부담금은 사학연금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비용의 재원이 되는 것으로 학교법인에 의하여 부담된다.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사학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5항). 다만 학교법인 중 사립대학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학연금법 제47조 제2항 전문).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는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이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되는 경우를 제한함으로써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사립대학에서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어긋나는 회계 처리 등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비록 당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제73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당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구 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학교회계 내에서도 일반 교비회계와 분리되어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비로부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사용함으로써 사학연금법 제4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원고가 아닌 포항공과대학교로 하여금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사학연금법 제4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아니하였다.

(2)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2항, 별표2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관련규정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이 그 연구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 연구기관인 이 사건 연구소 내지 포항공과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또한 구 처리규정 별표3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는 '기타기관'으로서 '실지급한 인건비 액수'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곱한 금액을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위 '실지급한 인건비 액수'를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 액수'가 아닌 '4대보험의 법정부담금 등 위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액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이를 이 사건 연구소가 '인건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2항과 구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학출연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계상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이므로,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2항과 구 처리규정 제23조 제2항을 이 사건 연구소 연구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원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연구원들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까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재정적인 부담만을 받게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결과물인 방사광가속기를 국가에 기부



채납하였음에도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한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제1항, 구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등에 근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 또는 이 사건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및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성과의 소유자가 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제1항, 구 관리규정 제2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성과를 사용·대여 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협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재정적 손해만이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넘어 법인부담금까지 이 사건 연구개발비의 집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성규



.
.
: 2018-05-30

판사 이슬기

판사 강지성



별지

관련 규정

▣ 구 과학기술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혁신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법인부담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학교기관의 사무직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에 교직원의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공단이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5항 본문의 비목(費目)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국외 연구기관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22조(기술료의 징수)

-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12조제5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액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p>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	--	---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27조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7. 7.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①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②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제30조(집행잔액의 회수)

-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관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 3.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 계상기준</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70%;">세 부 산 정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봉제 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봉제 미적용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 기 관</td> <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 × 참여율</td> </tr> </tbody> </table> <p>※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p> <p>※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p>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p> <p>※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p> <p>※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p>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여 × 참여율									



		<p>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p> <p>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p> <p>※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p> <p>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 style="padding-left: 20px;">-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p> <p>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p> <p>○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	---